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서울아리수본부

대 상 : 총 3건

목 록

연 번	건의 제목	건의 부서
1	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(소관 : 환경부 / 건의일자 : 2025.3.28.)	생 산 부 (생산관리과)
2	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수도 적용부문 변경 건의 (소관 : 환경부 / 건의일자 : 2025.3.28.)	생 산 부 (기전설비과)
3	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 (소관 : 산업통상자원부 / 건의일자 : 2025.3.28.)	생 산 부 (기전설비과)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(생산관리과, '25.3.28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계법은 한강, 금강, 낙동강, 영산강·섬진강 수계법 등 총 4개의 법률로 구성 ○ 지난 '24. 2. 13. 한강수계법을 제외한 3개 수계법(시행령)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추가 ※ (추가) 수도시설 중 취수·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등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강수계 수도사업자는 취수·정수시설의 유지관리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불가 ○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·공급을 위한 취수·정수 시설 유지보수 예산 증가 추세 ○ 한강수계 인근 도시들의 개발로 인한 급수인구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나, 전기요금 등 생산재료비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생산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 어려움 ○ 우리 시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연간 약 1,600억원 이상 납부하고 있으나, 상수도 관련 기금 지원은 약 8억원(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)에 불과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강수계 수도사업자도 3개 수계 수도사업자와 같이 취수·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	<p>환경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				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한강수계법 개정안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개 정 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44 383 911 757">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. </td> <td data-bbox="911 383 1278 757">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44 757 911 1272"> 제22조(기금의 용도) 1. ~ 14. (생략) <신 설> 5. ~ 9. (생략) 10.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</td> <td data-bbox="911 757 1278 1272"> 제22조(기금의 용도) 1. ~ 1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. 가뭄·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.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5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개 정 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44 1350 911 2022"> 제28조(기금의 용도) 법 제 22조제10호에서 “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~ 14. (생략) <신 설> 15.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·하류 지역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</td> <td data-bbox="911 1350 1278 2022"> 제28조(기금의 용도) 법 제 22조제10호에서 “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「수도법」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·정수 시설의 유지 관리 사업 16. 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 행	개 정 안	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22조(기금의 용도) 1. ~ 14. (생략) <신 설> 5. ~ 9. (생략) 10.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제22조(기금의 용도) 1. ~ 1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. 가뭄·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.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5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	현 행	개 정 안	제28조(기금의 용도) 법 제 22조제10호에서 “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~ 14. (생략) <신 설> 15.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·하류 지역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	제28조(기금의 용도) 법 제 22조제10호에서 “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「수도법」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·정수 시설의 유지 관리 사업 16. 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	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								
제22조(기금의 용도) 1. ~ 14. (생략) <신 설> 5. ~ 9. (생략) 10.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제22조(기금의 용도) 1. ~ 1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. 가뭄·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.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5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											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
제28조(기금의 용도) 법 제 22조제10호에서 “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~ 14. (생략) <신 설> 15.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·하류 지역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	제28조(기금의 용도) 법 제 22조제10호에서 “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「수도법」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·정수 시설의 유지 관리 사업 16. 그 밖에 한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										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22조) ○ 동법 시행령(제28조) ○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35조) ○ 동법 시행령(제36조) ○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33조) ○ 동법 시행령(제35조) ○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33조) ○ 동법 시행령(제35조) 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수도 적용부문 변경 건의 (기전설비과, '25.3.28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따라, 상수도 분야는 '서울시'라는 업체 아래 산하 4개 실국 배출원 중에서 다수 비중인 '폐기물 부문'으로 일괄 분류되어 제도 이행 중임 ※ 市 산하 사업장(배출비중, %): 물재생센터(44%), 자원회수시설(28%), 상수도(15%), 난지매립지(13%)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리수는 천만 서울시민 삶에 필수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공재로서, 온실가스 배출원의 99%가 '전력사용'에 의한 간접배출이며, '폐기물'처럼 줄여야 하는 공정이 아님에도, '폐기물 부문'으로 분류되어 과도한 감축목표('18년 대비 '30년 46.8%↓)를 적용 받고 있음 ※ 부문별 감축목표(%): (폐기물)46.8%, (수송)37.8%, (건물)32.8%, (공공·기타)12%, (산업)11.4% ○ 기후 위기 대응 및 수돗물 고품질화를 위한 '시설확충'과 급수지역 확대 및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'생산량 증가'로 인해 4차 계획기간('26~'30년)부터는 할당량 초과에 따른 배출권 매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도한 감축목표 지속 적용 시, 배출권 매입비용 연간 2.2억원 예상(연간 2만톤, 11천원/톤 기준) - 이는 아리수 생산원가 상승 및 수도요금 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	<p>환경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수도 분야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부문으로의 적용 변경 건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4차 계획기간('26~'30년) 할당대상 부문 적용 시, 상수도 사업장을 '폐기물 부문(46.8%↓)'에서 '공공·기타 부문(12%↓)'으로 변경 적용 건의 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배출권거래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 건의 (기전설비과, '25.3.28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리수 생산·공급을 위한 상수도 전력요금제는 ‘산업용’ 요금제 적용 중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간 7차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아리수 생산 동력비 예산 55%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전기요금: ('22년 3회) 25.3% → ('23년 3회) 23.6% → ('24년 1회) 11.6% 동력비(억원): ('22년) 574(기준) → ('23년) 749(31% ↑) → ('24년) 813(42% ↑) → ('25년) 890(55% ↑) - '25년도 동력비 예산 상수도 전체 사업비 예산의 11.1% 차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25년 총 사업예산: 7,987억원 / 동력비 예산: 890억원 ○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화를 위한 ‘시설 확충’ 과 급수지역 확대 및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‘생산량 증가’로 상수도 전력사용량 증가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수도 시설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생산·공급하는 ‘사회기반시설’ ○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현실화율(88.1%)로 수돗물 공급 중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요금현실화율(88.1%, '24년 기준) = 톤당 평균요금(771.5원) ÷ 톤당 생산원가(876.1원) ○ 영리 목적의 일반 산업용과 구별되는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요금제 필요 	<p>산업통상 자원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상승 및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소요로 아리수 생산원가 상승 및 수도요금 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※ 노후 정수장 증설·현대화 추진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암(40만㎥/일) 현대화('22~'28년, 2,062억원) - 강북2(25만㎥/일) 증설('22~'28년, 2,761억원)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수도의 시민 편익 증대 및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의 특성과 수도요금 인상 우려 등을 고려하여, '교육용' 전력요금제에 준하는 '상수도용' 전력요금제 신설 건의 ※ 교육용 전력요금제 :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(산업용 대비 약 30% 저렴) ex) 학교인증 교육시설, 도서관, 박물관 등 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 및 제56조 	